

**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
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**

2013년 9월 4일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박상수

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

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08월 22일 (목)

나.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2013년 08월 27일 (화)

4. 관련근거
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02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

5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,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6. 주요 개정내용

가. 상위법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소규모 공사 금액 기준 상향(안 제2조 1호 및 2호)

나. 소규모 공사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 신설 (안 제7조 제2항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7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재정비하고,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은 2008년 12월 9일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시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1호 소규모공사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였고,

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
2010년 12월 13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를 제102조 제1항으로, 제52조 제1항을 제105조 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,

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</u></p> <p><u>업무위탁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</u>(이하 “구” 라 한다) 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(감리)업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규모공사” 라 함은 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----- <u>기관에</u> 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</p> <p>1. “소규모공사”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----- ----- <u>제102조제1항에</u> 따 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 울특별시 마포구청장----- ----- <u>전면 책임</u> 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----- -----.</p>

6. “치수공사” 라 함은 하천
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
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
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소규모공사 감
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
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
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위탁대상은
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
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
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
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
한 감독업무로 이를 서울특별시
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시설관리
공단,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
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
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
탁 할 수 있다.

1. 주요시설물 공사
2. (생 략)
3. 기계설비 공사
4. (생 략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

6. “치수공사”란 -----

-----.

제3조(적용범위) -----

-- 조례에서 ----- 따른
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서울특별시
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
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---
--- 호의 어느 하나 -----
----- 감독업무는

----- 「지
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치한 공
법인에 위탁할 -----.

1. 주요시설물공사
2. (현행과 같음)
3. 기계설비공사
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-

<p>구청장은 수탁기관을 <u>선정함에</u>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<u>제5조의 규정에 의한</u>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</p> <p>제7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<u>당해</u>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 선정할 때 ----- ----- 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수탁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</u>----- - <u>제5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.</p> <p>제7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----- 1 ----- 1 ----- 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</u></p>
--	--

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
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
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
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
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
외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토목팀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제반 회무와 회의록의 정리·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 (생략)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

③ -----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-----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-----.

-----.

⑥ -----

1명----- 모든 사무와 회의록의 작성 및 정리·보관-----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권한행사-----

<p><u>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</u></p>	<p>-----.</p>
<p>제9조(협약체결 등) ①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<u>각호</u>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.</p>	<p>제9조(협약체결 등) ①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4. (생 략) 5. <u>기타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<p>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<u>30일전</u>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p>	<p>②----- ----- <u>30일 전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비용 징수 등)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·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<u>당해</u>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비용 징수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

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·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·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3조(지도 · 감독)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· 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·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·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명령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4조(사무편람) ① (생략)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

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-----
----- 수행할 때 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도 · 감독) ①-----
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

-----.
-----.

②----- 보고 · 검사 결과 -----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-----

-----.

③제2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14조(사무편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수탁기관이 사무편람-----

<p>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위탁의 취소 등) ①구청장은 다음 각 <u>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사유가 <u>발생한 때</u>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위탁의 취소 등) ①----- ----- <u>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<u>발생한 경우</u>----- -----.</p>
<p>1.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<u>아니한 때</u></p>	<p>1. ----- ----- <u>아니한 경우</u></p>
<p>2. (생 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<u>위반한 때</u></p>	<p>3. ----- -- <u>위반한 경우</u></p>
<p>②구청장이 <u>제1항의 규정에 의</u> <u>거</u>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<u>수탁기관에게</u>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②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<u>수탁기관에</u>----- -----.</p>
<p>제16조(보칙) 구청장은 <u>제5조 내</u> <u>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</u> 시 및 구가 <u>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</u> <u>의하여</u>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 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보칙) ----- <u>제5조부</u> 터 <u>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----- <u>「지방공기업</u> <u>법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u></p>
<p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</u> <u>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</p>	<p>제17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</u> 에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

■ 지방자치법 [시행 2013.3.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[시행 2013.4.1] [대통령령 제24390호, 2013.2.20, 일부개정]

제102조(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)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

가.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

1) ~ 22) 생략

나.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2.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

가.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·터널·배수문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나.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[전문개정 2010.12.13] [제50조에서 이동 <2010.12.13>]

제105조(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)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
1. ~ 14. 생략

[전문개정 2010.12.13][제52조에서 이동 <2010.12.13>]